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

수신
(경유)

제 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를 통지합니다.

구분	제 품 명	제 조자명 / 수입자명	제 조공장	취소사유
확인취소 대상제품				
면제인정 취소 대 상제품				

발신명 의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/ 전자우편주소

/ 공개
구분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]